

소방방재청장고시제 2006-11 호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消火器具の火災安全基準(NFSC 101)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消火設備である消火器具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圍)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消火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 1 号の規定による消火器具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1. "消火薬劑"とは、望遠性能がある物質を加工して消火に使う薬劑をいう。
2.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手動式消火器"とは、消火薬劑を圧力により放射する機構として、人が手動で操作して消火するもの(消火薬劑による簡易消火用具を除く。)をいう。
3.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自動式消火器"とは、可燃性ガスなどの漏出を自動で遮断して、消火薬劑を圧力などにより自動で放射して消火するものをいう。
4.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4. "小型手動式消火器"とは、能力單位が 1 單位以上で大型手動式消火器の能力單位未滿の手動式消火器をいう。

5. "대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 급 10 단위 이상, B 급 20 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5. "大型手動式消火器"とは、火災時の人が運べるように運搬台と車輪が設置されていて、能力單位が A 級 10 單位以上、B 級 20 單位以上である手動式消火器をいう。
6.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6. "自動拡散消火用具"とは、密閉または反密閉された場所に固定させて火災時、火炎や熱によりチ自動で消火薬劑が拡散して消火する消火用具をいう。
7. "간이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簡易消火用具"とは、手動式および自動式消火器以外のものとして、簡易消火用に使うものをいう。
8.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8. "居室"とは、居住、執務、作業、集会、娯樂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目的のために使う部屋をいう。

제 4 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4 条(設置基準) ① 消火器具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 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1. 消防対象物の設置場所により別表 1 に適合した種類のものとする事。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 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 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消防対象物により能力單位(消火器具の消火能力を表す数値として、手動式消火器および消火薬劑による簡易消火用具においては法第 36 条第 5 項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した技術基準によって測定された数値を、その他の簡易消火用具においては別表 2 による数値をいう。以下同じ。)が別表 3 による基準以上のものとする事。
 3.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 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3. 第 2 号の規定による能力單位の他に、別表 4 の規定により付属用途別に使われる部分に対しは、消火器具の能力單位を追加して設置すること。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手動式消火器は、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 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各層ごとに設置するものの、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 1 個の手動式消火器までの歩行距離が、小型手動式消火器の場合には 20m 以内、大型手動式消火器の場合には 30m 以内になるべく配置すること。ただし、可燃性物質がない作業場の場合には、作業場の実情に合うように歩行距離を緩和して配置することができ、地下口の場合には、火災発生の恐れがあったり、人の接近が容易な場所に限って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이 消防対象物の各階が 2 以上の居室で区切られた場合には、アの規定により各階ごとに設置するほか、床面積が 33 ㎡以上で区切られた各居室(アパートの場合には各世帯をいう。)にも設置すること。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 개 이상 설치할 것

우 地下街中、トンネルの場合には、能力単位 3 単位以上の手動式消火器を走行方向の側壁の長さ 50m 以内ごとに 2 個以上設置すること。

5. 능력단위가 2 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5. 能力単位が 2 単位以上になるよう手動式消火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おいて、簡易消火用具の能力単位数値の合計数が全体能力単位合計数の 2 分の 1 を超過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6. 消火器具(自動式消火器および自動拡散消火用具を除く。)は、床から高さが 1.5m 以下の所に備えつけて、手動式消火器においては"消火器"、乾燥砂においては"消火用砂"、膨張真珠岩および膨張ひる石においては"消火ひる石"と表示した標識を見やすいところに掲示すること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7. 自動式消火器は、アパートの各世帯別に台所に次の各目の基準により設置すること。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消火薬剤放出口は、換気口(台所で発生する熱気類などを外へ排出する装置をいう。以下同じ。)の清掃部分と分離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くて、該当防護面積を有効に消火できるように設置すること

나. **감지부**는 법 제 36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치할 것

이 感知部は、法第 36 条第 5 項の規定により型式承認された有効な高さおよび位

置に設置すること。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ウ 自動式消火器のガス遮断装置は、台所配管のバルブから 2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ものの、常時確認および点検が可能ないように設置すること。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エ 自動式消火器の探知部は、受信部と分離して設置するものの、空気より軽いガスを使う場合には天井面から 30 cm 以下の位置に設置して、空気より重いガスを使う場所には床面から 30 cm 以下の位置に設置すること。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オ 自動式消火器の受信部は、周囲の熱気流または湿気などと周囲温度に影響を受けなくて使用者が常時見ることが出来る場所に設置すること。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二酸化炭素またはハロゲン化合物(ハロン 1301 を除く。)を放射する消火器具(噴射式自動拡散消火用具を除く。)は、地階や無窓階または密閉された居室として、その床面積が 20㎡未満の場所には設置できない。ただし、排気のための有効な開口部がある場所で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5 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 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 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 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 条(手動式消火器の減少) ① 小型手動式消火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または大型手動式消火器を設置した場合には、当該設備の有効範囲の部分に対しは、第 4 条第 1 項第 2 号および第 3 号の規定による手動式消火器の 3 分の 2(大型手動式消火器を置いた場合には 2 分の 1)を減少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地階を除いた階数が 11 階以上の部分、近隣生活施設、慰安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老幼子施設、医療施設、アパート、業務施設(無人変電所を除く。),通信撮影施設、教育研究施設、輸送者同車関連施設、観光休憩施設はこの限りでない。

②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大型手動式消火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または屋外消火栓設備を設置した場合には、当該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に対しは大型手動式消火器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제 6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6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消防対象物の位置、構造、設備の状況により類似の消防施設にも、この基準により当該消防対象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火器具の機能を遂行でき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効力範囲の中でその類似の消防施設をこの基準による消防施設で防護消火器具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제 4 조제 1 항제 1 호 관련)

소화기구 구분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自動拡散消火用具		간이소화용구簡易消火用具				
	이산화탄소소화기二酸化炭素消火器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정정소화약제소화기クリン消火薬剤消火器	분말			액체계소화기液体系消火器	자동확산소화용구自動擴散消火用具	파열식	분사식	마른모래乾燥砂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膨張ひる石膨張真珠岩	그밖의 것その他のもの		
		1	2		1	1	1								1	1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건축물, 기타 공작물 建築物その他工作物	-	○	○	○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電気室および電算室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通信機器室	○	○	○	○	○	○	-	-	-	-	-	-	-			
특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可燃性固体類または合成樹脂類	○	○	○	○	○	○	-	○	○	○	○	○	○			
가연성액체류 可燃性液体類	○	○	○	○	○	○	-	○	○	○	○	○	-			
그밖의 것 それ以外の物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可燃性ガス	○	○	○	○	○	○	○	○	○	○	○	○	○			

[별표 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 4 조제 1 항제 2 호 관련)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乾燥砂	삼을 상비한 50ℓ 이상의 것 1 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삼을 상비한 160ℓ 이상의 것 1 포	1 단위

[별표 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 4 조제 1 항제 2 호 관련)

소 방 대 상 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慰安施設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当該用途の床面積 30㎡ごとに能力単位 1 単位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및 문화재 公演会場、集会場、観覧場および文化財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 전시장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 공장 · 창고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近隣生活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展示場、老幼子施設および医療施設、共同住宅、業務施設、通信撮影施設、工場、倉庫、輸送自動車関連施設および観光休憩施設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 4 조제 1 항제 3 호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p>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次の各目の施設. ただし、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または自動式消火器具が設置された場合には、自動拡散消火用具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p> <p>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 한다) • 건조실 • 세탁소 • 대량 화기취급소</p> <p>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p> <p>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p> <p>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p>	<p>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상의 수동식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바닥면적 10 ㎡ 이하는 1 개, 10 ㎡ 초과하는 것을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2. 발전실 • 변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 1 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p>	<p>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 개 이상 (다만, 통신기기실 • 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p>
<p>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p>	<p>능력단위 2 단위 이상</p>

<p>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의 규정에 따른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p>	<p>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에 서 정하는 수량 이상</p>	<p>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 50 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p>
	<p>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에 서 정하는 수량의 500 배 이상</p>	<p>대형수동식 소화기 1 개 이상</p>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의 수동 식소화기 1 개 이상. 다만, 자동식소 화기가 설치된 장소는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 kg 미만은 제외 한다)	능력단위 5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 개 이상 및 대형수동식 소화기 1 개 이상		
6.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 • 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 개월 동안 제조 • 사용하는 양	200 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제조 • 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 개 이상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 개 이상
		200 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 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2 개 이상
	300 kg 미만	제조 • 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 단	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1 개 이상
	300 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제조 • 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 마다 능력단위 5 단	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1 개 이상

비고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 바닥면적 50 ㎡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수동식 소화기를 2 개 이상 비치하 여야 한다.